

의안번호	제771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771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구 조정
 -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(안 제5조 등)
 - “농업기술원”에 분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(안 제24조의2)
- 분장사무 조정
 - 문화체육관광국 :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 신설(안 제10조)
 - 소방본부 : 사무명칭 변경(119특수구조단 → 119특수대응단)(안 제14조)
 - 청남대관리사업소 :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9조)

3. 의안전문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6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기획관리실)”을 “(기획조정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
11의3.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

11의4.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
제14조제10호 중 “119특수구조단”을 “119특수대응단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분원)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.

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.

제4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⑦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⑩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⑪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⑫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⑮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⑯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⑲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⑳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㉑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㉒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㉓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㉔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소 관 부 서	
	주관실국	부 서
일반행정 분 과	기획조정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대변인, 감사관, 자치경찰위원회, 기획조정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교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~ 9. (생략)
- 10.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설>

제49조(소관사무) 청남대관리사업
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~ 4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119특수대응단 -----

--

제24조의2(분원)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.

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.

제49조(소관사무) -----
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·본부를 두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원묵